

## 01 법률칼럼

- 각국의 국민식별번호 보호작전  
(이은우 변호사)

## 04 Vietnam LIVE!

-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토지취득방법  
(변희경 변호사·JS HORIZON Vietnam 법인장)

## 07 열려라 중국

-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국내 A주 주식 시장 상장 추진 시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 09 생생러시아

- 러시아 법상 도산절차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13 주목! 이 판례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대법원 2009. 6.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 16 최신법령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
-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절차 완화 등
- 잘 알려진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및 주식등의 대량 보유보고 제도 개선 등

## 18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한양국제특허법인 업무제휴
- '탄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실무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법무법인 지평지성, 아름다운 가게 개최
- 홍성준 변호사, 사법연수원 전문과목 '도산법' 강의
- 금태섭 변호사,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발간
- 김성수 변호사 외 '존엄사, 교회에 생명의 길을 묻다' 발간
- 배상근 변호사, USC Gould School of Law, LL.M. 과정 유학
- 중국 상해 사무소 이전
-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이전

## 31 업무동향

- 지평지성,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조정신청 관련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측 조정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지평지성, TPC코리아와 YS중공업간 조선계약 분쟁에 관하여 TPC코리아 자문제공
- 지평지성, RG(Refund Guarantee)건 관련하여 메리츠화재 대리
- 강성 대표변호사, 에너지관리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법률자문역으로 위촉
- 김성수 변호사, 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위촉
- 한승혁 호주변호사, 외교통상부 법률자문역 선정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 각국의 국민식별번호 보호작전



이은우 변호사

13자리의 숫자. 돌리와 로봇 태권브이도 가지고 있는 숫자. 전국민이 가지고 있는 숫자. 무엇일까요?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렇게 전국민에게 부여되는 번호를 국민식별번호(National ID)라고 하는데, 각국에서 신용도용범죄(ID Theft)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신용도용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국민식별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전국민에게 부여되는 국민식별번호는 없지만, 대신 193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이하 SSN)가 2005년 현재 미국인 중 2억2,700만여명에게 발급되어 사실상 국민식별번호(de facto national ID)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SSN은 사회보장을 위한 번호라는 애초의 발급의 목적과 다르게, 은행계좌의 개설, 신용카드 발급, 각종 거래 등에 널리 개인을 식별(identification)하는 번호로 사용되고 있고, 개인을 인증(authentication)하는 비밀번호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SSN은 미국에서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key to the kingdom)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신원도용범죄자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2007년 1년 동안 840만명이 신원도용범죄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은 49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부시 대통령은 ID Theft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원도용 방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President's Identity Theft Task Force, 이하 PITTF)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PITTF는 ID Theft를 막기 위해 SSN의 보호에 가장 역점을 두었는데, 2007년 4월에 31개 항목의 전략 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하고, 2008년 12월에 민간영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역에서의 SSN 사용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SSN의 사용을 제한하고, SSN을 공연하게 표시하는 것(public display)과 인터넷으로 전송(internet transmission)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가적으로 SSN에 대한 보호의 표준을 마련하고, SSN의 유출이나 침해가 있을 경우의 통지(notification)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각 주나 연방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부지런히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마련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열린 미국 111대 국회의 첫 법안이 다름 아닌 SSN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SSN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처럼 SSN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주장, 즉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국민 개인식별번호는 없는데, 1964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이하 SIN)가 사실상의 국민식별번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연간 20억 달러 정도의 신원도용범죄 피해가 발생한다는 추산이 있을 정도로 신원도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아예 법률에서 SIN을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는 예를 들면, 캐나다 연금, 노령보험, 고용보험 가입시,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재향군인 혜택, 학생대출, 학생금융지원을 받을 때처럼 매우 제한적입니다. 캐나다 프라이버시위원회는 SIN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ID Theft의 보호를 위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SIN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전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국민식별번호가 없고, 대신 의료부문에서는 의료보호카드번호(Medicare Card Number)가, 조세와 관련해서는 납세번호(Tax File Number)가 있는데, ID Theft를 막기 위해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캐나다처럼 포지티브 리스트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에서 국민식별번호 또는 사실상(de facto)의 국민식별번호는 ID Theft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입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특별하게 취급하도록 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보호의 범위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보안서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본인확인을 할 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호 대신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대체확인수단을 마련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학원, 항공사, 호텔, 주유소, 병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들이 이 의무를 모두 지키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모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들이 습관적으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모으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의 트위터나, 유튜브 서비스는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했더니 223개 주요 웹사이트 중 91.9%인 205개 사이트에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유용한 정보로 생각하고 수집하겠지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들에게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모으는 사업자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3년 실시한 한 조사에서 이용자의 75%는 웹사이트 가입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 중 가장 꺼려하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댓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면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 적용대상 웹사이트가 153개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거의 모두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등록번호나 대체확인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하고, 그 정보를 6개월씩 저장해야 하는데, 물론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각국이 국민식별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인터넷 실명제는 그와 반대로 가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 한 인터넷 이용자나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 그 부담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없애고,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JS Horizon

(Vietnam LIVE)

##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토지취득방법



변희경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법인장

### 1. 최근 베트남 현황

최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베트남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올 상반기 시장에 공급한 약 180억불에 이르는 유동성,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한 금융정책 및 상반기 개인소득세 면제 등 각종 경기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 부동산시장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자, 베트남에서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한국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토지사용권 취득

베트남에서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임대(lease)를 통하여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대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재임대권(sub-lease)을 부여받은 토지사용권 보유자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는 이와 같이 적법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증서(서류가 붉은 색이므로 통상 "Red Book"이라 불립니다)를 발급함으로써 그 권한을 공적으로 확인합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사용권을 임대받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50년까지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나 그 자금회수율은 더딘 사업의 경우에는 70년까지 허용됩니다.

이와 같이 토지사용권을 임대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임료는 매년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전 임대기간에 대하여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 등 해당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베트남에 등록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임료를 매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토지 임대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해당 토지소재지의 관할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토지상에 건물 기타 부속물 등이 있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철거하는 등 토지정리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민위원회가 토지사용권 부여에 관한 승인을 하기 전에 토지정리작업 및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에 대한 보상이 마쳐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법상으로는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토지정리작업 및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에 대한 보상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민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직접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토지정리 및 보상작업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향후 지급할 임료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4. 토지취득 과정에서 주의할 점

외국인 투자자가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와 협의함에 있어서는, 그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가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가 적법하게 발급된 토지사용권증서를 소유하고 있는지, 해당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없는지 및 해당 토지가 외국인 투자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용도에 부합하는지 등을 실사과정을 거쳐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체결하게 되는 보상계약서(일반적으로 "Compensation Agre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Notary Public)와 인민위원회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때는 인민위원회에도 해당 공증된 보상계약서 사본을 송부해 둘 필요가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로부터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가능한 한 곧바로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가 악의를 품고 제3자에게 토지사용권을 2중으로 양도하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5. 결론

베트남에서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법제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은데다가 이에 관한 실무관행 또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베트남의 법제와 관할기관의 실무운영에 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JS Horizon

(열려라 중국)

##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국내 A주 주식 시장 상장 추진 시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중국 상무부 천젠 부부장은 2009년 7월 2일 제13기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경내 증시 상장 관련 정책을 보완하여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정한 때에 중국 경내 증시에 상장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추이 발표와 함께 관련 세부정책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외자기업의 중국 경내 상장이 새로이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국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연속 8개월간 감소세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98년 금융위기 이후의 첫 하락세였습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경제에서 전국 납세액의 21%, 수출입 금액의 55%를 차지하고, 직접적인 취업인구만도 4,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DI의 급격한 하락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우량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중국 국내 증시에 상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기존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외자유치의 안정세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국내 증시 상장은 A주, B주 주식시장을 불문하고 일찍이 2001년 11월에 증권감독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가 연합으로 발표한 "상장회사와 관련되는 외국인투자 문제에 대한 의견()"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02년 3월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공모 청약서 내용과 양식에 대한 특별규정()"이 제정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되어 절차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초 아래에서 2004년에 절강성 소재 일본계 기업인 녕파동목이라는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처음 상장되었습니다.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국내 증시 상장이 붓물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중국 정부로부터 상장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의 원인으로 현재 상장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몇몇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상장 추진 의지는 지금까지의 외국인투자기업 상장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외환당국과 증권감독당국 등 관련 여러 부서와 업무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발표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우량기업의 선정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특별한 시장인 “외자기업판(外資企業版)” 개설 필요 여부, 거액의 IPO가 기존 A주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빨라도 6개월 내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증시 상장 추진 외에 외국 국적의 기업을 중국 국내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상해증권거래소에 “국제판(國際版)” 개설도 준비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JS Horizon

(생생 러시아)

## 러시아 법상 도산절차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관련링크 :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8. 12월호\)](#)

■ [관련링크 : 러시아 법상 도산 절차 \(1\)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9. 6월호\)](#)

법인에 대한 도산절차는 (i) 심사절차(Наблюдение / Supervision), (ii) 회생절차(Финансовое оздоровление/ Financial rehabilitation) 또는 외부관리절차(Внешнее управление / External management), (iii) 파산절차[Конкурс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 Bankruptcy liquidation(receivership)], (iv) 화의(Мирное соглашение / Composition)로 구분됩니다. 본회에서는 법인에 대한 도산절차 중 심사절차와 회생절차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심사절차(Наблюдение / Supervision)

도산절차의 개시가 신청되면 법원은 신청권자의 신청이 도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정상태 조사, 채권자·채권목록 작성, 제1회 채권자집회 소집과 채무자의 자산의 보전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결과 도산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도산절차를 개시하고 임시관리인(Временный управляющий)을 선임합니다. 심사절차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심사절차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도산절차가 개시된 대상법인의 업무집행기관은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심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대상법인 경영권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법인은 조직을 변경하거나 다른 법인 혹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상법인은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약정 (Joint venture agreement)를 체결하거나 지사·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유가증권 (주식은 예외)을 발행할 수 없으며, 배당금 지급 역시 금지됩니다. 나아가 대상법인이 장 부가를 기준으로 총자산의 5%를 초과하는 자산이 관련된 거래를 체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금지된 형태의 거래를 하는 경우 임시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관리인은 심사종료일 10일 전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 개최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심사절차의 결과 상사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정을 기초로 (i) 회생절차개시 혹은 외부관리개시를 결정하거나, (ii) 채무자의 파산선언 및 파산절차 개시결정, (iii) 화의에 따른 도산절차 종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회생절차(Финансовое оздоровление/ Financila rehabilitation) 또는 외부관리절차(Внешнее управление / External management)**

### 가. 회생절차(Финансовое оздоровление/ Financila rehabilitation)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지급능력회복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집회 결정을 기초로 상사법원에 의해 개시됩니다. 회생개시결정 선고와 함께 상사법원은 행정관리인(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управляющий)을 선임합니다. 이러한 상사법원의 결정에는 회생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상사법원이 승인한 상환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절차 대상기관의 기존 경영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기간의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채무자는 회생절차수행결과보고서를 행정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관리인은 회생절차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이행확인서(заклучение о выполнении плана финансового оздоровления), 상환계획이행확인서 및 채권변제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상사법원은 행정관리인의 보고와 채권자의 이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미상환 채무가 없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원인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산절차 종료결정
2. 외부관리개시 결정

## 3. 채무자의 파산선언 및 파산절차 개시결정

### 나. 외부관리절차(Внешнее управление / External management)

외부관리절차는 채무자의 지급능력회복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집회 결정을 기초로 상사법원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외부관리절차는 절차 목적의 측면에서 회생절차와 동일하지만, 대상법원의 경영권이 외부관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회생절차와 다른 점입니다. 외부관리절차는 원칙적으로 18개월 이내에서만 인정되지만, 6개월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부관리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대상법인의 기존 경영권자는 권한을 상실하고, 외부관리인(Внешний управляющий)이 대상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외부관리인이 선임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법인의 기존 경영권자는 외부관리인에게 법인회계서류, 그 밖의 서류 및 인감 등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외부관리기간 동안 금전채무와 강제지급금 납부의무는 지급이 유예(moratorium)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требование о взыскании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지적 재산권 사용료(требование о выплат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й по авторским договорам),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손해배상금(требование о возмещении вреда, причиненного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ю) 등은 원래의 내용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외부관리인은 선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부관리계획(план внешнего управления)을 작성하여 채권자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외부관리계획은 연방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채무자의 지급능력회복 기간과 지급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부관리인은 채권자집회로부터 외부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상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관리절차 개시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외부관리계획이 상사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사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선언과 파산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관리계획에는 생산구조조정(перепрофилирова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비수익생산시설 폐쇄(закрытие нерентабель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매출채권 추심(взыскание дебиторской задолженности), 자산 일부매각, 채권양도(уступка прав требования должника), 보통주식 추가발행(размещ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обыкновенных акций), 영업양도(продажа предприятия)와 같은 구체적인 지급능력회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외부관리인은 채권자·채권목록과 채권자집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들의 이의 내용을 포함하여 외부관리절차 진행경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채권자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관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승인받은 보고서를 상사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상사법원은 대상법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거나 화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도산절차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법원은 대상법인의 지급능력회복과 관련하여 채권자와의 정산 이전결정, 외부관리인보고서 기각결정, 파산선언 및 파산절차개시결정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JS Horizon

(주목! 이 판례)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6.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 1. 들어가며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으면, 각 부분은 별개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 관계를 다루는 법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주로 문제됩니다. 이 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관리단 및 규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율하는 제20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종래 판례는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의 허용 여부에 논점이 국한되었던 데에 반해, 대상 판결은 분리 처분된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선의'의 의미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 2. 쟁점 대상 조문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집합건물법의 대상 조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1항은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성의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종속하여서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부분'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하는 법리가 공용부분의 성질상 당연한 결과임에 반하여 이와 같이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정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괴리현상을 막아 그에 따른 폐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해를 최소화하고, 등기부의 복잡성·방대성을 완화하여 등기절차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필요가 크지 않으면 일체성의 원칙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규모 연립주택과 같이 구분소유자의 수가 많지 않아 토지등기부가 복잡·방대하지 않거나 단기간 내에 건물이 철거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위 원칙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사례에서도 건물이 없는 공지에 별도의 구분소유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에 증축을 하는 때에는 신축 또는 증축되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제2항 단서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처분은 무효이지만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가 아닌가는 구분건물로서의 등기가 행하여지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설령 제3자가 구분건물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였더라도 유효한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설정되었다고 믿고 거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이런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때 선의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는데, 전유부분 소유권을 얻음으로써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지분만을 경매절차에서 따로 취득했던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는 '분리처분금지 제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상 분리처분금지의 취지가 기재된 바 없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적법한 경매목적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보면 피고는 분리처분금지의 제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함으로써 대지사용권까지 취득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서, 결국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4. 대상판결의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여야만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피고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처럼 피고가 경매절차 진행 당시 등기부등본,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을 통하여 대상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는 원고가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닌 것입니다.

## 5. 나오며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 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위해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대상판결과 같이 선의의 의미를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6.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6.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JS Horizon



(최신 법령)

## 1.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

: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 제9784호, 2009. 10. 10. 시행)

- 1)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2) 법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5를 신설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제16조의2를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9로 조정하되 100분의 9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등을 개정하여 대주주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3) 다운로드 :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 제9784호, 2009. 10. 10. 시행\)](#)

## 2.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절차 완화 등

: 「상업등기법」 일부 개정(법률 제9749호, 2009. 5. 28. 시행)

- 1) 2009. 5. 28. 공포된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법 제 81조 제11호 단서 및 제82조 제5호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한 동법의 해당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 및 변경등기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법 제30조를 개정하여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

도록 하여,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登記할 수 없는 상호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상업登記법」 일부 개정\(법률 제9749호, 2009. 5. 28. 시행\)](#)

### 3. 잘 알려진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11호, 2009. 7. 1. 시행)

- 1) 종전에는 기업 내용이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법인도 주권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공모하려면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증권발행비용이 늘고 적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제121조를 개정하여 잘 알려진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고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및 제4항, 제155조를 개정하여 경영 참여 목적에 관계 없이 신규 보고의 보고기한은 5일 이내로 통일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보고 공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를 개정하여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 만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였습니다.
- 4)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11호, 2009. 7. 1. 시행\)](#) JS Horizon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한양국제특허법인 업무제휴



(사진 :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는 한양특허법인 김연수 대표변리사(좌)와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동영 대표변호사(우))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한양국제특허법인은 6월 30일 지평지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양측의 변호사들 및 변리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 법인은 이번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출원부터 분쟁 해결까지 One-Stop Service Process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및 마케팅 등에 합의함으로써, 국내외 고객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고 안정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 법인은 특히 일본, 미국 등 지적재산권 주요국의 언어에 탁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팀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해외 고객 발굴 및 현지 로펌과의 업무협력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한양국제특허법인은 변리사 22명 및 외국변호사, 직원 등 총 106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2008년 출원건수(4,912건) 기준으로 국내 5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법무법인 지평지성(변호사 124명)의 지적재산권팀은 대형로펌에서 시작하여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총 1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법인 모두 유러머니지 산하의 지적재산권 전문잡지인 MIP(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09년판에서 특허출원, 특허소송, 상표출원, 상표소송 및 저작권 전 분야에서 상위 10위 안에 랭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조인식에서 지평지성 박동영 대표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은 기업 자산의 핵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어느 분야보다도 심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며, 변호사와 변리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않으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번 업무제휴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로 한층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한양국제특허법인의 김연수 대표변리사도 "국내외 고객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한층 더 안정적인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업무제휴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법무법인 지평지성 지적재산권 업무 소개](#)
- [한양특허법인 홈페이지](#)

[관련기사]

- [서울경제 - 지평지성·한양국제특허법인 업무제휴 MOU](#)
- [연합인포맥스 - 법무법인 지평지성·한양국제특허법인, 전략 업무제휴 MOU](#)
- [파이낸셜뉴스 - 지평지성, 특허법인과 전략적 제휴](#)
- [아시아투데이 - 법무법인 지평지성·특허법인 한양국제 업무제휴](#)
- [법률신문 - 지평지성·한양국제특허법인,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

[관련사진]



JS Horizon

(지평지성 소식)

## '탄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실무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6월 25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투자증권(주) 및 계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탄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실무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최우선 의제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세계적인 동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며, 녹색성장위원회 도경환 국장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을, 계명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이명균 교수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을, 한국투자증권 음지현 상무가 '녹색 성장 관련 펀드 운용 방안'을 법무법인 지평지성 신민 변호사와 권용숙 변호사가 '녹색성장기본법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CDM의 법률적 쟁점'을 각각 발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고객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미나 자료 등의 문의는 [yjk2@js-horizon.com](mailto:yjk2@js-horizon.com)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세미나 요약

#### 제1세션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녹색성장위원회 도경환 국장)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위기와 에너지·자원 위기에 동시 직면한 상태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장기적 신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하며 녹색성장은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 제2세션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계명대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 이명균 교수)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와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의무 동참 압력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도 CDM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하는 탄소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상업은행인 ABN AMRO는 탄소시장이 commodity market 중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월드뱅크는 2010년에 탄소시장이 1,5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8년 기준으로 전세계 탄소시장의 거래 규모는 1,260억 달러에 달해 예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들어 지난 5월 미국 하원에서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이 법안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어, 미국이 탄소시장의 수요자로 참여할 경우 탄소시장의 성장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시장의 실패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적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별한 대책이 없는, 온난화가 지속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 생명, 산업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후변화를 주어진 제약조건으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향후 기업의 수익성과 국제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제3세션 : 녹색 성장 관련 펀드 운용 방안(한국투자증권(주) 음지현 상무)

녹색 산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은 이미 녹색산업 분야 세계최고 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조차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녹색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므로 세계 녹색 산업 시장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 산업 관련 펀드는 비약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시장 잠재력,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을 주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펀드 투자 수익률 또한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제4.1세션 : 녹색성장기본법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법무법인 지평지성 신민 변호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2009. 2. 27. 자 정부안. 이하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post-2012 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 에너지정책, 금융 및 조세정책, 국토 관리정책, 교통정책, 건축정책 등 에너지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안('기본법의 기본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기본법은 녹색산업, 녹색기술, 녹색경영 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향후 법률해석과 적용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법이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다른 법률들과의 충돌로 정책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기본법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2년 폐지되고 발전비율할당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기본법상 녹색산업투자회사제도는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구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법 제30조는 탄소세 도입의 근거로 기능할 여지가 있고,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전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별론으로 하고-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본법은 일정업체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CDM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법은 원자력산업의 육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 이루어질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 제4.2세션 : CDM의 법률적 쟁점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CDM 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시기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CDM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CER)이 획득될 때까지 발생하는 문제와 탄소배출권(CER)이 발생된 후 이를 거래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CDM 사업단계에서는 CDM 사업과 관련된 여러 위험이 있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들을 CDM 프로젝트 계약 및 CER 매매계약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DM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특히 CER의 법적 소유권을 둘러싼 지루한 협상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바, 법적 소유권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DM 사업을 통해 CER이 발생할 경우, CER과 같은 탄소배출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탄소배출권 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탄소배출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참고자료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1. 세미나 개요

시간	내용
13:30 ~ 14:00	방문객 등록
14:00 ~ 14:05	개회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14:05 ~ 14:10	환영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군섭 고문
14:10 ~ 14:15	축사 : 에너지관리공단 윤석운 부이사장
14:15 ~ 14:35	Session 1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발제 : 녹색성장위원회 도경환 국장
14:35 ~ 15:00	Session 2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발제 : 계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이명균 교수
15:00 ~ 15:10	Session 1 및 Session 2 관련 질의응답
15:10 ~ 15:30	Tea Time
15:30 ~ 15:55	Session 3 : 녹색 성장 관련 펀드 운용 방안 발제 : 한국투자증권(주) 음지현 상무
15:55 ~ 16:35	Session 4-1 : 녹색성장기본법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제 : 지평지성 신민 변호사  Session 4-2 : CDM의 법률적 쟁점 발제 :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16:35 ~ 16:50	Session 3 및 Session 4 관련 질의응답
16:50 ~ 17:00	폐회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 사회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 2. 관련기사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지성, 신재생 에너지 세미나 25일 개최
- 파이낸셜뉴스 - '탄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실무세미나'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3. 행사 사진



개회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환영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군섭 고문)



축사 : 녹색성장위원회 (윤석운 부이사장)



Session 1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녹색성장위원회 도경환 국장)



Session 2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계명대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 이명균 교수)



Session 3 : 녹색 성장 관련 펀드 운용 방안  
(한국투자증권(주) 이지현 상무)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Session 4.1 : 녹색성장기본법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법무법인 지평지성 신민 변호사)



Session 4.2 : CDM의 법률적 쟁점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탄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실무세미나' (2009. 6. 25.)

JS Horizon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아름다운 가게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토요일인 지난 7월 4일 아름다운 가게 서울역점에서 '2009년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나눔의 정신”, “배려의 마음”, “행동하는 참여”를 실천하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지평지성 변호사와 임직원이 일일점원이 되어 2,025점의 기증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4,828,600원)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정기적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 관심을 보내주시고 직접 방문해 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련링크]

- ['지평지성 아름다운 가게 개최' 안내장](#)
-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 : <http://bstore.org>

[행사사진]



환영사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이해옥 상임이사(좌)와 법무법인 지평지성 조용환 대표변호사(우)



아름다운 가게가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수여한 감사장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기증왕상을 받고 있는 김상준 변호사 가족



자원봉사중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당일 행사장 모습 1



당일 행사장 모습 2



법무법인 지평지성 자원봉사자 및 아름다운 가게 관계자 기념촬영 (2009. 7. 4.)

JS Horizon

(지평지성 소식)

## 홍성준 변호사, 사법연수원 전문과목 '도산법'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홍성준 변호사가 오는 8월부터 사법연수원의 전문과목 중 '도산법'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홍성준 변호사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도산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JS Horizon

## 금태섭 변호사,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발간



(그림 :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책 표지 )

창비출판사에서 지평지성 금태섭 변호사의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직업에 대한 바른 정보를 통해 십대들에게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획된 첫번째 시리즈 중에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1부는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학생 인터뷰어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2부는 금태섭 변호사가 현장의 멘토로서 직접 들려줄 수 있는 진지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련링크]

- [교보문고 -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JS Horizon

(지평지성 소식)

## 김성수 변호사 외 '존엄사, 교회에 생명의 길을 묻다' 발간



(그림 : '존엄사, 교회에 생명의 길을 묻다' 책 표지 )

북코리아에서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 외 문시영, 정유석, 김형민, 이장형이 공동 저작한 '존엄사, 교회에 생명의 길을 묻다'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에 대한 개신교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관점들이 있는지 성찰하기 위한 가이드북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교보문고 - 존엄사, 교회에 생명의 길을 묻다](#) JS Horizon

## 배상근 변호사, USC Gould School of Law, LL.M. 과정 유학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배상근 변호사)

지평지성 금융파트의 배상근 변호사가 미국 LA의 USC Gould School of Law(LL.M. Program) 연수차 6월 출국하였습니다. JS Horizon

(지평지성 소식)

## 중국 상해 사무소 이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중국 상해사무소가 지난 6월 29일 같은 건물 23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주소 :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 전화번호 : 86-21-5208-2800
- 팩스 : 86-21-5208-2807 JS Horizon

##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이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가 6월 29일, 하노이 대하빌딩으로 확장 이전을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 주소 :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 전화번호 : 84-4-6266-1901
- 팩스 : 84-4-6266-1903
- 인터넷전화 : 070-7432-9168
- 인터넷전화 : 070-7432-9168

[관련기사]

- [연합뉴스 - 지평지성, 인도차이나지역 업무 확대](#) JS Horizon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 지평지성,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조정신청 관련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측 조정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지난 6월 19일, 한화그룹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M&A를 위한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 청구 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상기 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정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 한화 "대우조선 인수보증금 3150억 돌려달라" 법원에 신청](#)
- [중앙일보 - 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 신청](#)
- [매일경제 - "MOU단계서 계약 파기해도 이행보증금 몰취는 당연"](#)

[담당변호사]



[이호원 대표변호사](#)



[박동영 대표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홍성준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김지홍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황승화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JS Horizon

(업무동향)

## 지평지성, TPC코리아와 YS중공업간 조선계약 분쟁에 관하여 TPC코리아 자문제공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TPC코리아와 YS중공업간 조선계약 분쟁에 관하여 TPC코리아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현덕규 변호사](#)



[여인봉 미국·영국변호사](#)

JS Horizon

(업무동향)

## 지평지성, RG(Refund Guarantee)건 관련하여 메리츠화재 대리

지난 5월 26일, 메리츠화재는 신한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진세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관련 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상기 소송건과 관련하여 메리츠화재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메리츠화재, "신한은행 RG소송 대응 착수"](#)
- [머니투데이 - 메리츠화재 "신한銀이 제기한 소장 공식 접수"](#)

[담당변호사]



[현덕규 변호사](#)



[여인봉 미국·영국변호사](#)

JS Horizon

(업무동향)

## 강성 대표변호사, 에너지관리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법률자문역으로 위촉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지평지성의 강성 대표변호사가 2009년 7월 1일, 에너지관리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POBA)의 법률자문역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성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해당 기관에서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관련링크]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POBA\) 홈페이지](#)

JS Horizon

(업무동향)

## 김성수 변호사, 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위촉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가 2009년 7월 1일자로 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위촉된 다른 분야의 자문변호사들과 위촉장을 받고 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주로 고용·근로·기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현장에서의 안전보장이 소홀히 취급되면서 사고 재해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를 입는 근로자를 1만명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중소기업장에 예산 1955억원을 투입해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10만200개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교육, 기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노동부](#) JS Horizon

(업무동향)

## 한승혁 호주변호사, 외교통상부 법률자문역 선정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

지평지성의 한승혁 호주변호사가 2009년 7월 1일, 외교통상부의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 및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및 법률자문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8위 교역상대국('08년 기준)이며, 특히 광물자원 분야에서는 1위 수입대상국 및 해외투자대상국으로서, 한국-호주 FTA는 우리의 수출 확대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주와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S 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7,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강남분사무소**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4층 Tel : 02)2009-7500 Fax : 02)2009-7520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